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 2차 입주자모집공고

■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이용안내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본 아파트는 2022.02.28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적용대상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고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최초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.
■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일은 2022.06.30.(목) 이며, 이사시기은 2025년 03월 예정입니다.
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경상북도 구미시은 「주택법」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최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중 거주의무가 없습니다.
■ 본 아파트는 청약과 계약 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당첨 및 계약의 제한이 있으니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금액 등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이 있으니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7조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54조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6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전매제한 기간 중 또는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재당첨 제한 또는 일반공급 1순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64조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7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전매제한 기간 중 또는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재당첨 제한 또는 일반공급 1순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65조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8